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을 선진화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실천함은 물론 우리의 고객인 납세자에 대하여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 應益原則(응익원칙)

과세원칙은 여러 가지 원칙에서 구성되나 租稅의 配分原則立案이라는 側面에서 구분하면 국민이 받는 이익에 應하여 과세하는 應益的 課稅와 租稅負擔能力 與否에 따른 應能的 課稅로 分類된다.

그런데, 福祉國家時代에 있어서의 稅制의 基本원리는 應能的 課稅에 의해서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衡平의 立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는 權力的인 行政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의 恩惠를 받아서 地方産業은 발달하고 주민의 소득은 배양되며, 이 배양된 소득을 稅源으로 해서 들어오는 稅收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충당되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것과 같이 公共 給付와 주민의 反對給付와의 사이에 일반적 報償關係를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든 租稅의 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應益原則은 조세의 根據論으로 볼 때 歷史的으로 큰 역할을 해왔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중요한 意義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租稅配分原則보다는 정치적 的의를 더 지니고 있으며, 국가의 給付에는 불가분한 것이 많으며 개인에게 分割計算키 어려우므로 그 이익의 측정방법에 따라서는 應能原則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住民受益關係를 고려한다면 넓게 부담을 분담해야 할 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에서 應益原則은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다.

- 편집실 -